

## 18. 건설시공정착 및 안전관리대책

자료제공 : 건설교통부

이 자료는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대한설비협회가 주최하여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순회교육 교재임  
<편집자 주>

감사 : 건설교통부 안계헌 사무관

### I.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 1. 건설안전관련 법령

#####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동법 제26조의2 제2항)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동법 제3항)

##### 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작성대상공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이하 “시특별”) 대상시설물 건설공사
  - 연장 100m이상, 특수교량(현수·사장·아치교, 경간장 50m 이상)
  - 연장 1천m이상 또는 3차선이상 터널, 광역시도 이상 도로상 터널
  - 연장 100m이상 또는 트러스 철도교량
  - 연장 1천m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 안의 철도터널
  - 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 계류시설
  - 다목적댐, 발전용댐,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5천㎡이상 다중이용건축물
  - 하구둑, 특별시·광역시 직할하천의 수문·제방 및 그 부속시설, 시 안의 하천수문
  - 광역·지방상수도·공업용수도 및 부대시설, 20만㎡이상 폐기물매립시설
- 10m이상 굴착 또는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 인가·허가·승인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작성 및 제출(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제3항)

- 작성자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
- 확인자 :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 제출시기 및 제출처
  -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당해 공종 착공전에 제출)
  - 발주자가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에 제출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시행규칙 제21조의3 제1항 별표 14)

- 총괄안전관리계획
  - 공사의 개요

- 공사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공사개요·전체공정표 및 설계도서  
(당해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
- 안전관리조직
  -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등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기·내용·안전점검공정표 등 실시계획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시설물의 보호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내역,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
-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등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 · 흙막이 · 발파 · 향타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비탈면, 흙막이등 안전성계산서
  - 콘크리트 공사
    - 거푸집 · 동바리 · 철근 · 콘크리트등 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등 안전성계산서
  - 강구조물공사
    - 자재 · 장비 등의 개요, 시공사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계산서
  - 성토 및 절토공사(흙댐공사 포함)
    - 자재 · 장비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계산서
  -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 · 공법 등의 개요,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4) 안전관리계획 신 · 구 대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97. 7. 21)

기 존 내 용	개 정 내 용
<대 상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건설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특별법상 1종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li> <li>- 지하 10m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의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li> <li>-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li> <li>- 인가·허가·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건설공사</li> </ul>
<작 성 및 제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자</li> <li>·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자</li> <li>·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li> <li>- 확인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자</li> <li>· 없음</li> <li>- 제출시기 및 제출처</li> <li>·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발주자 또는 인가·허가·승인기관에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li> <li>- 제출시기 및 제출처</li> <li>· 총괄안전관리계획서는 당해공사 착공전에 발주자 또는 인가·허가·승인기관에 제출</li> <li>·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당해공사 또는 공종 착공전에 발주자 또는 인가·허가·승인기관에 제출</li> </ul>
<작 성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개요</li> <li>· 안전관리 인원 및 조직</li> <li>·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 (실시시기, 횟수등)</li> <li>· 점검확인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괄안전관리계획서</li> <li>·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li> <li>· 공정별 안전점검계획</li> <li>· 공사장주변의 안전관리대책</li> <li>·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대책</li> <li>· 안전관리비 집행계획</li> <li>·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li> <li>-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li> <li>·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강구조물공사,</li> </ul>

기 존 내 용	개 정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li> <li>·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li> <li>· 안전성 계산서</li> <li>· 시공상세도면 및 안전시공절차</li> <li>·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li> <li>· 안전점검계획서 및 안전점검표</li> </ul>

### 다. 안전점검의 실시

#### (1) 안전점검의 종류(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및 제2항)

- 자체 안전점검
  - 시공자가 공사기간동안 매일실시
- 정기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
  - 정기안전점검 최소빈도
    - 가설공사 : 비계, 가설도로등 주요 가설구조물 설치완료 후
    - 굴착·발파 및 성·절토공사 : 굴착 시공중, 지반함수율 급변시
    - 콘크리트공사 : 주요 구조부별 최종양생 직후(매몰직전)
    - 강구조물공사 : 강구조물 설치 또는 조립완료 직후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비용은 결함 원인제공자 부담)
    - ※ 건설안전점검기관
      - 시특별 제9조에 의한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동법 제25조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및 점검내용

-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행령 제46조의4 제3항)
  -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미리 협의
  -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자와 동일계열회사인 기관에는 점검의뢰 금지

**라. 안전관리비 계상**

(1)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체결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4항, '97. 1. 13 신설)

(2) 안전관리비 포함비용(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용
- 영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건축물 피해방지대책비용
- 공사장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3) 계상기준(시행규칙 제21조의4 제2항)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 작성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적용
- 정기안전점검비용
  - 시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기준 적용
- 주변피해방지대책비용
  -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 사전보강·보수·임시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계상
- 공사장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 공사시행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 토목·건축등 관련분야의 설계기준 적용

## 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제정

### 가. 제정목적

#### (1) 건설현장 안전관리제도 정비

- 건설공사의 대형화·복잡화·고층화 및 대규모 지하굴착 등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됨
- 건설안전 관련법령의 개정 및 보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97. 7. 21)
  - 동법 시행규칙 개정('97. 8. 25)

#### (2) 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의 조기정착 도모

- 관련법령 개정등에 따른 일선현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등 제시
- 계획서의 적정성과 그 이행여부를 감리원·감독자등이 객관적이고 일관성있게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1) 제정 : '96. 12~'97. 9

- 관계기관 협의 : '97. 7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97. 8. 5
- 지침 확정 및 배포 : '97. 9. 30

#### (2) 향후 감사 및 시공실태점검 등을 통하여 현장이행실태 확인 및 필요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

### 다. 주요내용

#### (1) 작성·확인 및 제출 세부기준



◦ 작성요령

- 작성자 : 전기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 안전관련 계산서 및 안전성 검토서등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반드시 설계책임자 서명 날인
  - 각종 제출서류중 시공계획등과 관련하여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생략 가능
- ※ 세부작성기준 : 동 「작성지침」 제2장 및 제3장의 작성기준 참조

◦ 확인 및 제출요령

- 절차

- 총괄계획서는 당해 건설공사(공종별 계획서는 당해 공종) 실착공 15일전까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2부 제출하여 확인요청
  - 단,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경우는 인가·허가·승인 행정기관에 제출
  - 확인결과 처리 : 확인요청서 접수 후 10일이내에 확인결과 통지
  - 적정 : 공사착공
  - 조건부 적정 : 일단 공사착공 및 보완 후 재확인 신청
  - 부적정 : 공사착공중지 및 보완 후 재확인 신청
- ※ 재확인 신청기한 : 총괄계획 5일, 공종별계획 10일 이내
- 재확인결과 통지기한 : 총괄계획 3일, 공종별계획 5일 이내

(2) 안전관리조직

◦ 기본역할

- 시공중인 구축물등 공사장 및 공사장주변의 안전확보
-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 안전교육의 실시
-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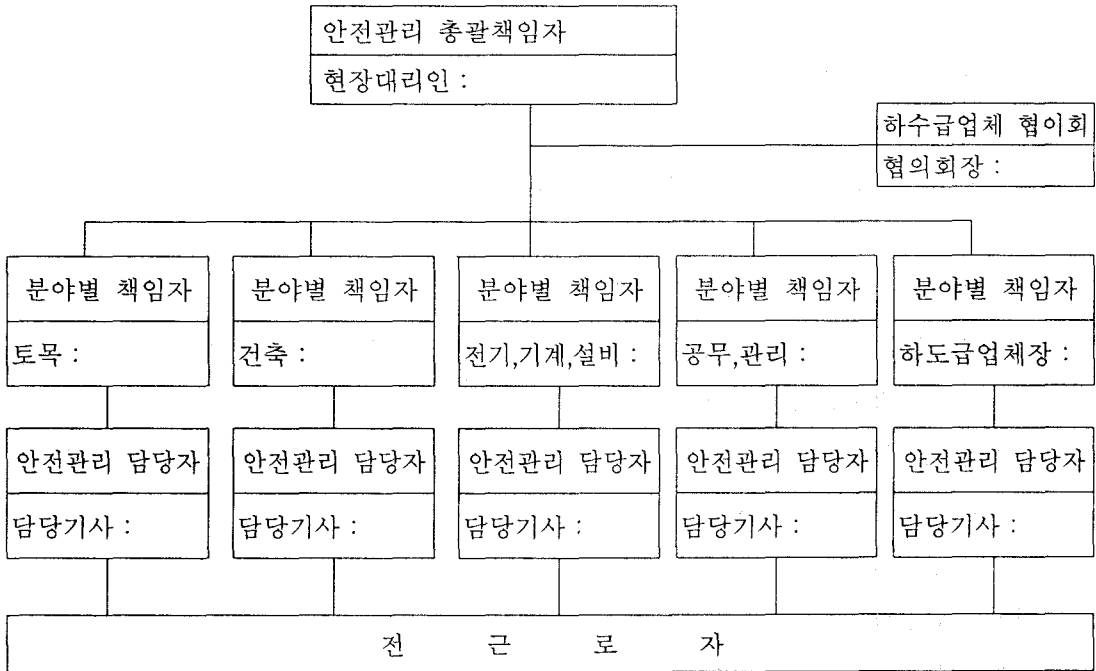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된 자로 구성>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
-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 토목, 건축, 전기·기계·설비등 공사 각분야별 시공·안전관

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 안전관리 담당자 : 공사현장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 안전관리 관계자의 주요직무

<안전관리 관계자의 기본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의 책임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책임의 명문화
-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비의 편성, 집행 및 확인
-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하수급인 간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감독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부여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의 지원
  - 정기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실시, 기타교육 총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 안전목표와 방침의 전달등 일상안전교육 실시
    - 작업의 진행상황 관찰·지도
    - 당해 현장의 정리정돈 감독
  - 안전관리 담당자
    -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보조
    - 담당분야 자체안전점검 실시
  - 하수급업체 협의회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 작업장간의 연락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수급업체별)
  - ※ 구성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수급업체에 대한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전원
- (3) 안전교육계획
- 정기안전교육
    - 교육담당자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교육대상 : 현장내 전체 기술자, 작업자 및 직원

교육시기 및 시간 : 월 1회이상, 1회 1시간 이상

교육내용

- 주요공법의 이해
- 안전시공 절차에 관한 사항
- 자체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의 필요성
-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

일상안전교육

교육담당자 :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교육대상 : 현장내 당일 공사 작업자

교육시기 및 시간 : 매일 공사 착수전 10분이상

교육내용

당일 작업의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시공순서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으로서  
작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내용을 설정

- 가설공사
  - 가시설물 설치 및 조립순서, 유지관리 방법
  - 지지대 보강 및 조립부위 결속 방법
  - 가설물 위의 적치하중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굴착 및 발파공사
  - 기본적인 토질조사 사항
  - 지하매설물 및 인접시설물에 대해 조사된 사항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시설물 보호조치 방법
  - 계측기 설치 및 보호방법
  - 발파작업시 비산보호막 및 안전거리유지와 신호수 배치(유자격 담당자 배치)
  - 배수상태 및 계측상태 확인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치기순서 및 이어붓기 계획

벽, 바닥, 보의 치기 방법

시공이음 등에 대한 주의사항

거푸집 조치 기간

거푸집 표면 정리 등

· 강구조물공사

인양 와이어, 걸쇠 등의 설치방법

자재 적치방법

조립순서등 안전시공 절차 등

· 성토 및 절토공사

균열유무 및 함수변화의 확인방법

유도원의 배치위치(타 작업자 부근, 토석낙하 및 붕괴위험장소, 시야가 가리거나 교차로, 비탈면이나 절벽등)

장비운전시 제한속도 등

· 해체공사

구조재의 부식 및 집합상태

재료특성 및 하재예방

해체작업시의 상·하간의 연락방법

장비 이동시의 유도원의 배치 등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

차량 및 보행자의 유도를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경보장치 등의 설치 및 보수·

관리방법

복공판 설치 및 보수·관리방법

신호수 배치기준 및 신호방법 등

·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 교육담당자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교육대상 :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 교육시간 : 2주마다 1회이상, 1회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안전사고사례 교육
  - 시공상의 안전관리기술
  - 건설안전 관련 법규
  -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
  - 안전관리상의 의무 등

### 3. 자체안전점검

#### 가. 안전점검책임자

토목, 건축공사 각분야별 시공,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자가 책임점검자가 되어야 한다.

#### 나. 실시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안전점검시 주요공정별 안전점검 항목은 자체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며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라.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익일 자체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별지 제19호 서식)

## 4. 벌칙

### 가. 건설공사 안전관련 벌칙

#### 건설공사 안전관련 처분규정 (건기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대 상	위 반 행 위	처 분 내 용	근 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 등록업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 니한 때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2호
건설업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영업정지 3월 3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 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소홀	영업정지 2월 2천만원  벌점 1~3점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주택건설 등록업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 의무 를 위반한 경우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실시한 때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 의무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대 상	위 반 행 위	처 분 내 용	근 거
	를 위반한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2월	
감리전문회사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 공사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미흡	업무정지 6월이내  벌점 1~2점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을 3회이상 받은 때 -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소홀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벌점 1~2점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감리원	- 안전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다수의 인명피해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공사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미흡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이내  벌점 1~2점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첨부 1>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비교표**

구 분	건설교통부	노동부
근 거	건설기술관리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출서류명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li> <li>·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폭발물사용 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가축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공사</li> <li>· 계약서에 품질보증계획수립이 명시된 공사</li> <li>· 인·허가, 승인한 행정기관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높이 31m이상인 건축물</li> <li>· 최대지간 50m이상인 교량 건설공사</li> <li>· 터널공사</li> <li>· 제방높이 20m이상인 댐 건설등 공사</li> <li>· 압력 1.3kg/cm<sup>2</sup>이상 잠함공사</li> <li>· 10.5m이상인 굴착공사</li> <li>· 30톤이상 고정식크레인 사용공사</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li> <li>· 공정별안전점검계획</li> <li>· 공사장주변 안전관리대책</li> <li>· 교통안전대책 및 시설</li> <li>· 안전관리비 집행계획</li> <li>· 안전교육 및 비상시 조치계획</li> <li>· 공종별 안전관리계획(공법, 시공절차·상세도, 안전성계산서, 장비배치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조직표</li> <li>· 공사장 주변현황 및 도면</li> <li>·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li> <li>· 개인보호구지급 계획</li> <li>· 공사용 기계·설비·건물등 배치도서</li> <li>· 가설물관련 도서</li> <li>· 기타가설 및 가설비계획(양중, 조명, 환기, 배수, 전기·통신시설등)</li> </ul>
작 성 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사업주

구 분	건설교통부	노동부
제 출 처	발주청 또는 인·허가, 승인행정기관 (공사 착공전)	한국산업안전공단 (착공 30일전)
확인 및 심사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확인후 통지 (실착공 15일전 제출, 10일 이내 통지)	한국산업안전공단 심사후 통지 (착공 30일전 제출, 15일 이내 통지)
주요확인 및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확보 및 임시시설의 안전성</li> <li>· 공정별 안전점검계획</li> <li>· 공사장 주변 안전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보호구 및 기구</li> <li>· 작업공정 및 재료의 안전성</li> <li>· 가설물의 안전성</li> <li>·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li> </ul>
현장확인 및 지도	· 시공자 및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현장상주 매일확인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안전공단 1회/개월</li> <li>· 지방노동관서 수시점검</li> </ul>
확인·감독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공자에게 개선지시</li> <li>· 미이행시 시공중지등 조치</li> </ul>	· 공사착공 중지 및 공사중단
사고책임	· 공사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시공자	· 사업주

## II. 건설현장 안전관리 규제개혁 방안

### 1. 건설현장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추진배경

#### 가. 건설현장안전관리 이원화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가 건기법(건교부)과 산안법(노동부)으로 이원화되어 중복 추진되고 있어 건설업계에 엄청난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일원화시켜달라는 대한건설협회 및 전령련등의 건의가 있어 건교부는 이문제 해결을 위하여 행정쇄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 대한건설협회장이 '97. 6. 25 건설분야 안전관리 제도의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건교부장관에게 건의하였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경우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와 중복되므로 삭제 필요
  - 외부기관에 의한 지도, 점검 의무를 축소(11개→4개) 요청
- 안전종합진단, 안전기술진단, 일반기술지도, 전문기술지도, 유해·위험방지계획 확인점검, 지도감독, 안전관리비 사용확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품질확인→자체안전점검(시공자, 발주자), 정기안전점검(건설안전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건설안전전문기관) 품질확인(발주자)으로 축소 필요
-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98. 5. 12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 및 안전점검과 사업장 안전보건진단 등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분야 안전관련제도를 정부부처간 협의로 일원화토록 건교부장관에게 요청

## 2. 건설공사안전관리 합리화 방안 추진경위

### 가. '97. 9. 12 건설안전제도개선 행정쇄신위원회 심의

- (1) 제1안 : 안전과닐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은 대상물에 대하여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면제
  - (2) 제2안 :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계획서의 공동심사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합동으로 심사하고 양계획서의 통합 가능한 부분은 통합
- ※ 심의결과 제2안이 채택되었으나 일원화 요구 및 개선방향에 배치되는 것으로 노동부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교부는 반대하고 노동부는 찬성하여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무산

### 나. '98. 6. 5 : 건설공사 안전관리 일원화 심의(규제개혁위원회 제2분과위)

- (1)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비, 안전기준 등에 관

한사항들을 일원화하여 건기법에서 규정토록 함

**다. '98. 7. 8 : 건설안전관리 일원화 정책토론회개최(총리실 주관)**

(1) 사회자 : 양승두 규제개혁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

(2) 발표자(2인)

- 제1주제 :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발전방향

(군산대 건축공학과 안홍섭 교수 : 노동부측)

- 제2주제 :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 : 건교부측)

(3) 토론자 : 건교부측 3명, 노동부측 3명

※ 건교부측 발표자 및 토론자는 건설안전관리는 건기법(건교부)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 안전은 산안법에서 계속관리를 주장하고, 노동부측 발표자 및 토론자는 건설안전관리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거나 노동부로 일원화 하여야만 근로자 안전이 확보된다고 주장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라. '98. 7. 25 : 건설안전합리화방안 제출(총리실 양부처안 취합)**

**마. '98. 11. 25 : 건설현장 안전관리 합리화방안 심의(규제개혁 제1분과위)**

(1) 건설안전은 건교부, 근로자안전은 노동부에서 담당하도록 기존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중복되고 과도한 규제는 폐지

(2) 건설현장의 감독은 감리자를 통해 실시하고 양부처 및 외부점검기관의 현장방문과 점검을 억제하여 민간자율 안전체계를 구축(안전감리자는 건설, 근로 안전업무 전담)

- 안전관리조직

현장관리조직으로 일치시키고 그 외조직은 폐지하고 용어 등은 통일(산안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존치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교부는 건설기술분야, 노동부는 근로자 안전분야로 엄격히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 작성하되 안전감리자가 양계획서를 확인점검 실시
- 안전점검  
 자체점검, 외부전문기관점검, 사고발생시 점검 등으로 최소화하고, 기술지도(노동부)등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도를 받도록 유도
- 안전관리 교육  
 일상안전교육, 신규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등으로 최소화하고 업계 자율로 실시
- 안전관리비용  
 안전관리비(건교부), 표준안전관리비(노동부)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감리자 책임하에 사용확인
- 건설안전 벌칙  
 건설안전관리와 관련한 기존 벌칙조항은 안전책임이 확대될 경우 강화  
 ※ 건교부는 현장안전관리체계가 건기법과 산안법으로 중복관리되고 있었으나, 건설기술관련 안전은 건기법으로, 근로자 안전·보건·위생은 산안법으로 조정함으로써 중복규제가 해소되어 건설업계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고 판단되어 이 안에 동의  
 - 노동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안전감리원 심사를 당초대로 산업안전공단이 심사토록 준치를 요구하면서 일부 부동의

**바. '98. 12. 4 건설현장 안전관리 합리화방안 심의(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진설)**

- ※ 경제 제1분과위원회의 개선안에 대하여 노동부측의 반대(현행체제유지 주장)로 분과위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시 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기로 결정

**사. '99. 6. 30 : 건설현장 안전관리관련 규제개혁방안 심의(규제개혁제1분과위원회)**

※ 라항 본회의 심의 요약과 같으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마. '99. 7. 2 : 건설현장안전관련 규제개혁방안심의(규제개혁위원회)**

※ 라항 내용과 같음

**3. 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중복작성 제출**

- (1) 건기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산안법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목적으로 91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건기법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95년 8월에 도입되었다.
  - 양 법령에서 서류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중복되고 있으나 중복된 경우에도 두 계획서를 각각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2) 건기법의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자가 작성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안법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는 안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착공 30일전까지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에서 이를 심사 확정된 다음 시공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 (3) 건기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안전확보를 중심으로 공사전반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중심으로 하나 시공부분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항목을 보면 콘크리트 타설 계획, 거푸집, 동바리조립

상세도, 가설도로 계획등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건기법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기술적인 사항이 중복되고 있다.

## 나. 안전점검 중복 실시

(1) 건기법에서의 안전점검은 자체 안전점검과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되어 있다.

- 자체안전점검은 건설현장에서 시공회사 안전관리 담당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 정기안전점검은 시공회사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전문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와 횟수에 따라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 정밀안전점검은 전문기관에 의하여 실시한 정기안전점검결과 공사의 기능적 물리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다.

(2) 산안법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에 대하여 3개월마다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안전점검과 기술지도, 안전보건진단 자체검사 등 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 도급인이 매일 산업재해 예방내용을 점검하는 순회점검과 도급인과 수급인 합동으로 월 1회이상 산업재해 예방내용을 점검하는 합동안전점검이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점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현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에서 매 3개월마다 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다.
- 기술지도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사규모에 따라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최고 22회까지 의무적인 안전지도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 안전보건진단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철도, 도로, 하천, 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자체검사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등이 크레인, 리프트, 콘도라, 승강기, 보일

러, 공기 압축기 등 기계장비에 대하여 6~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상이

- (1) 전기법, 산업법 등 각 개별법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별도로 규정하여 계상하고 있어 안전관리비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설비용 낭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 전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용, 정기안전점검 비용, 주변피해대책 비용, 통행안전대책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산안법의 표준안전관리비용은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용, 개인보호구등 안전장구 구입비용, 사업장의 안전진단 비용,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용, 근로자의 건강관리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라. 안전관리 교육 중복 실시

- (1) 유사한 안전교육은 중복실시함으로써 행정, 인력, 비용 낭비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 전기법에서는 일상안전교육, 정기안전교육, 협력업체 안전관리 교육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 산안법에서는 신규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다.

#### 마. 안전관리조직 중복

- (1) 현장 안전관리 조직의 상이와 이중관리로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전기법의 안전관리조직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하수급업체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 산안법의 안전관리조직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도급 사업 주간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다.



## 4. 본회의 심의결과 요약

### 가.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조직체계 개선안

현행 안전관리조직체계		일원화된 안전관리조직 체계
<u>산안법</u>	<u>건기법</u>	- 기본적으로 2단계시스템 (Two Tier System)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중 협력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명 가능 ※ 일정규모이상공사→안전관리자 ※ 하수급업체 협의회는 도급사업주간 협의체로 통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안전담당자 · 도급사업주간협의체	· 안전관리총괄책임자 · 분야별 안전 관리 책임자 · 안전관리담당자 · 하수급업체 협의회	
총 10개		총 2~5개

건기법상 4단계, 산안법상 6단계, 계 10단계의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기본적으로 2~5단계의 조직체계로 축소하고, 대규모 건설현장(토목공사 150억이상, 건축공사 120억이상이거나 평균근로자 200인이상)에 한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함)

### 나. 안전점검

- (1)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방문을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적인 방문점검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함

- 현재 건설 현장에 대해서 8개부처 21개 법률에 근거하여 외부기관의 빈번한 방문,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외부인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점검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점검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 점검실명제 도입
  - 발주청, 인가, 허가, 승인, 행정기관의 장등 외부인이 건설현장을 점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기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점검하도록 하고
  - 점검의 요건과 절차, 점검 실명대장기록, 비치등을 건기법령에 명시하여 외부인의 임의적인 건설현장 점검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안(신설)

- 건설현장 방문 또는 점검 명시
  -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실시
- 점검요원증 소지
  - 점검 또는 방문 사유 명시한 점검요원증을 제시하고 출입
- 점검실명대장비치
  - 건설현장 점검·방문의 목적, 시간, 내용, 점검자의 서명 등을 기록·보존

#### (2) 건기법상 점검제도에 대한 검토

- 「자체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필요성은 인정됨
- 「정기안전점검」은 점검빈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은 대상과 절차를 법령에서 정하여 제한하되, 필요시는 합동점검을 하도록 함
- 건기법상 임의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제한은 필요하므로 건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봄

#### (3) 산안법상 점검제도에 대한 검토

- 산안법에 의한 현장 안전점검을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만 허용하고, 근로감독관 현장방문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점검은 현행대로 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근로감독관의 표준안전관리비 확인은 현행대로 존치
- 「안전보건종합진단」의 대상과 「안전보건기술진단」 제도는 현행 유지
- 현행 산안법상의 「기술지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분야에 중점을, 「안전관리계획서」는 구조물 품질, 시공 및 주변 안전대책에 중점을 두어, 상호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 조정
  - 노동부와 건교부의 안전업무 중복문제 제기의 주요원인이 동일 건설현장에서 두 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작성 내용도 유사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양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각 부처의 고유 업무의 특성을 살리면서 중복 부분은 배제
- (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공사의 대폭 축소
  - 양 계획서의 작성 대상공사를 양부처 의견대로 대폭 축소토록 하여 업계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
    -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 현행 8종에서 5종으로 축소
    - ※ 안전관리계획서 : 현행 4종에서 2종으로 축소
- (3) 양 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 면제 제도 도입·확대 시행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확인 면제 제도는 노동부의 계획대로 확대 시행
  -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제출·확인 면제제도를 도입·시행
- (4) 양 계획서를 중복 제출하는 공사는 업체가 희망할 경우 동시에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업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양 계획서의 작성대상 공사가 일부 중복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동시에 양 계획서를 합본으로 작성하

여 감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

- (5) 「총괄안전관리계획서」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  
 다만, 건설현장의 사정상 분리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관리계획서」중 공종분야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적용
- (6) 중장기적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확보 방안 강구
- 중장기적으로는 건설공사가 조사, 계획, 설계, 시공등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  
 안, 근로자의 안전·보건위생과 시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함
  - 현재의 공사감리기능(감리단 또는 감리자)과 근로자 안전감독기능(근로감독관 및 산업  
 안전공단 전문가)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체제(종합안전관리조정자 또는 종  
 합안전감독자)의 도입방안을 양부처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2000년말까지 방안을 규제  
 개혁위원회에 제출

## 라. 안전관리비용

- (1) 현행대로 존치
- 예시
    - 표준안전관리비 → 근로자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시공안전관리비
- (2) 안전관리비의 산안법과 건기법상 별도 책정은 필요함
- 산안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는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교육비 등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서,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공사시공시 주변대책비, 정기안전점검  
 비, 통행안전대책비 등 시공상 안전을 위해
  - 각기 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현 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3) 표준안전관리비 비용 확인 점검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표준안전관리비를 확인하기 위하  
 여 별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점검시에 적정 사용 여부를 부수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므로 현행대로 유지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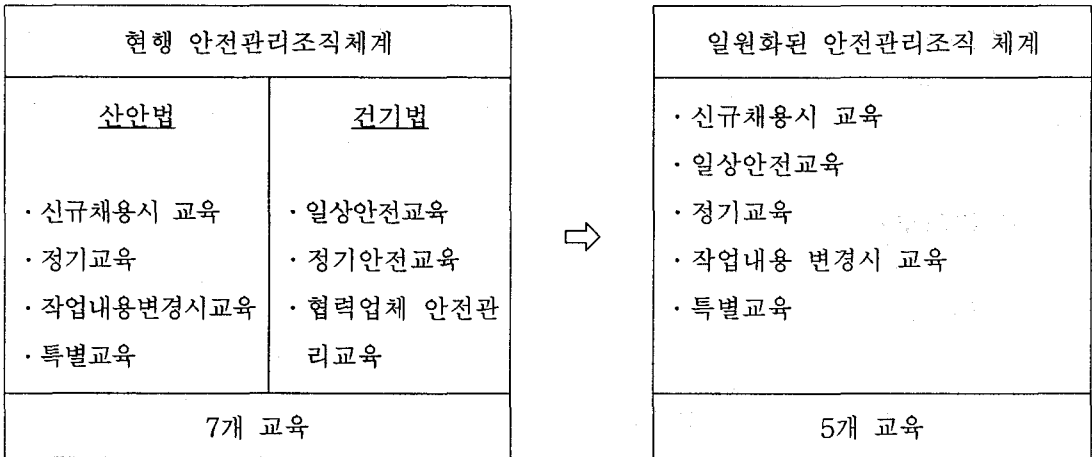
(4) 표준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불법 사용에 따른 벌칙 규정 강화

- 표준안전관리비 목적외 등 부당 사용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항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
- 건기법에서도 안전관리비 부당 사용시 벌칙 규정 신설

**마. 안전교육**

(1) 산안법과 건기법상의 안전교육체계 일원화

**안전교육체계 개선안**



양부처의 의견과 같이 산안법상의 안전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일원화하면서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기법상에 의한 안전교육은 시공기술적 사항으로 하되, 건기법상에 「일상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산안법령에 의한 교육으로 통일

**바. 건설안전벌칙**

- (1) 산안법 및 건기법상의 벌칙조항등 보완, 강화
- (2) 외국의 경우와 같이 과태료등 행정질서벌로 하고, 과태료 금액도 대폭 상향조정하여 사

업주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하는 풍토 조성

※ 노동부와 건교부에서 구체적 방안 및 일정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중간보고 : 10월)

※ 법무부, 법제처와 협조

## 5. 향후추진계획

- 가. 건교부와 노동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 나. 중장기적 차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확보방안 강구(종합안전관리조정자(노동부제안), 종합안전감독자(건교부제안)제도를 위하여 건교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2000년 말까지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토록 추진할 예정임

## Ⅲ.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

### 1. 부실벌점

가. 부실벌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설계 등 용역업자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설계등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및 감리원(이하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별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

나. 경감점수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 등이 받은 부실벌점에서 부실벌점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도록 한 점수

## 2. 부실벌점 관리체계

### 가. 흐름도

부실벌점 측정  
(발주 및 인허가기관)



부실벌점 총괄 통보  
(발주기관등 → 각 협회)



부실벌점처리현황 제출  
(각협회 → 건교부장관)



부실벌점 측정결과 적용  
(각 협회 → 발주기관)

· 측정대상 : 50억원이상 건설공사, 1.5억원 이상 설계 및 책임감리용역

· 측정일시 : 매반기말까지 측정  
(예 : 12월 31일, 6월 30일)

· 통보일시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점총괄표 통보

(예 : 1월 15일, 7월 15일)

· 위탁관리 : 부실벌점누계관리

· 제출일시 : 매반기말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현황 제출  
(예 : 1월 31일, 7월 31일)

· 적용일시 : 매반기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간 적용

(예 : 3월 1일, 9월 1일)

## 3.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가. 건설기술관리법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관리), 제13조의6(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등)

※ 시행규칙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 나. 부실측정대상

(1)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2)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바닥면적합계 1만제곱미터이상

(3) 설계등 용역 : 총용역비 1.5억원이상

- (4) 책임감리용역 : 총용역비 1.5억원이상
-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설계등 용역 및 책임감리용역

다. 부실벌점 부과대상자

- (1)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 (2) 위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
- (3) 설계용역, 책임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대상자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라. 주요부실벌점적용 사례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2)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별표 2]
- (3)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요령의 신인도, 적격심사기준)
- (4) 조달청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5) 관계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며, 건기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마. 부실벌점 경감기준



- (1) 시공능력평가, 우수업체 및 표창 등에 대한 부실벌점의 경감은 당해반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2개이상의 표창은 1개로 적용
- (2) 4.1사례 내지 4.4사례는 당해 현장에 대하여 경감하고, 4.5사례 및 4.6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며, 4.7사례 및 4.8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 부실벌점에서 경감
- (3) 5.1 사례는 당해 현장에 대하여 경감하고, 5.2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 벌점에서 경감하며, 5.3부실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 (4) 6.1사례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 경감하고, 6.2 사례 및 6.3사례는 측정기관이 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며, 6.4사례는 최종집계한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

번호	주요 경감 사례	경감점수
4		
4.1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2
4.2	- 최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1
4.3	- 구조물에 대한 최신기법 계측관리를 철저히 한 경우	1
4.4	- 최신 공사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	1
	- 매몰부분 및 완성구조물 검측 등의 기록(사진등)을 철저히 한 경우	
4.5	- 시공능력 평가결과 당해 업체의 평균점수가 90점이상인 업체의 경우	1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4.6	- 우수건설업자로 선정된 경우	2
4.7	-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3
4.8		2
	※ 4.5사례 및 4.7사례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사례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4.5사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5.1	- 최신관리기법을 적용한 경우	2
5.2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이 표창을 받은 경우	2
5.3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번호	주요경감사례	경감점수
6	· 설계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6.1	- 최신공법을 적용한 경우(당해 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6.2	- 설계등 용역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인 경우	3
6.3	-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6.4	-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 6.2 사례는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 (1)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회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당해 점검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로 나누어 평균한 부실벌점을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함
- (2)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함.
- (3)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함.

**사.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 (1)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이상 10점 미만인 경우에는 1점, 10점이상 15점미만인 경우에는 2점, 15점이상인 경우에는 3점을 각각 감점함
- (2) 부실벌점은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3) 부실벌점을 불이익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최초의 시기는 업체의 경우에는 1996년 9월 1일로 하고, 건설기술자등의 경우에는 1997년 9월 1일로 함
- (4)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5호 가목 내지 다목의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부실벌점을 책정

하고, 경감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제5호 라목의 주요경감사례를 기준으로 경감한 후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 (5) 부실벌점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은 부실벌점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측정기관은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벌점을 정정할 수 있음
- (6)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아. 부실벌점관리 총괄내역 통보

- (1)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에 의한 부실벌점종합관리업무를 아래와 같이 해당협회에 위탁
  - 대한 건설협회 : 건설업자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주택건설등록업자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설계등 용역업자
  - 한국기술사회 :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 한국건설감리협회 : 감리전문회사
  - 대한측량사협회 :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함

- (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부실벌점 총괄내역을 상기구분에 따라 각각 분류 통보하여야 함

#### 자. 부실벌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 (1)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실벌점 20점 이상 : 1월이상 2년이하
  - ※ 발주청에서 협회자료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2) 시공능력평가지 감점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3점이상 5점미만	0.5
5점이상 10점미만	1
10점이상 20점미만	1.5
20점이상	2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2~10점미만	1
10~15점미만	2
15점이상	3

(4) 적격심사시 감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회계예규 200·04-149)

차. 부실벌점측정 및 적용시점

(1) 부실벌점측정시점 : '95. 10. 12(시행규칙 시행)

※ '95. 10. 12 이전 준공된 용역 및 공사는 제외

(2) 불이익 적용시점

- 업체 : '96. 9. 1부터

- 건설기술자 : '97. 9. 1부터

- 매반기말 기준 2개월 경과한 6개월간(3.1~8.30, 9.1~2.29)

4. 신규법령 대비

개 정 전	개 정 후
· 부실측정대상중 기관의 장이 인정한 공사	·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사, 설계 및 책임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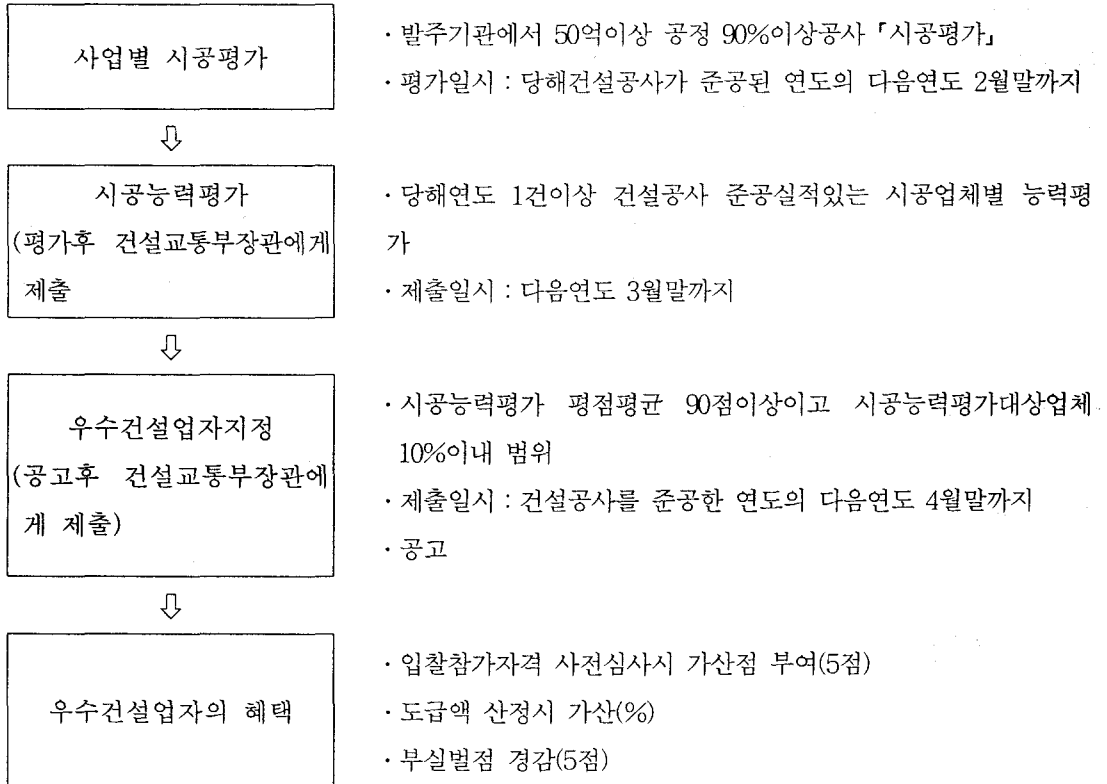
개 정 전	개 정 후
· 부실측정대상중 기관의 장이 인정한 공사	·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사, 설계 및 책임감리
<신 설>	· 공동도급인 경우 별점부과 대상자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대표자 - 분담이행방식 : 해당업체
· 별지 28호 내지 32호등 관리대장서식과 총괄표서식 이원화	· 관리대장을 총괄표로 일원화 · 면허번호 및 별점내역 추가
· 부실별점과 점수 이원화	· 부실별점으로 일원화
· 발주청 표창의 경우 최종집계한 평균 부실별점에서 경감 · 포창경감점수 : 15~30	· 발주청 표창의 경감은 발주청이 집계한 평균부실별점에서 경감 · 포창경감점수 : 3점
<신 설>	· 별점부과대상장자에 통지
· 별점기간 : 3년	· 별점기간 : 2년

## IV. 시공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 1. 도입배경

- 부실공사의 근원이 낙후된 건설기술 및 품질관리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 따라
-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경쟁적 품질확보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시공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

## 2. 시공평가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흐름도



## 3. 관련법령

### 가. 건설기술관리법

- (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 (2) 동법 시행령 제57조(설계 및 시공평가 등), 제58조(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59조(우수건설업자의 지정)
- (3)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시공평가), 제47조(시공능력평가), 제48조(우수건설업자 지정)

### 나. 국가 계약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우수시공업자 지정)
- (2) 회계예규(PQ심사요령 신인도)

## 4. 평가대상

### 가. 시공평가

- (1) 당해연도 90%이상 공정 진척된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 (2)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공사
- (3) 단, 다음 단순반복적인 공사는 제외
  -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준설공사,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 도로공사
  - 골토·정지등 단순토목공사, 구조물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하천공사, 창고·축사 등 단순건축공사

### 나. 시공능력평가

- (1) 당해연도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시공업체
- (2) 계속비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된 공사일 경우 전체공사를 말함

## 5. 평가방법

### 가. 시공평가

- (1) 평가단 : 발주청장이 지명한 3인이상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
- (2) 평가시기 : 준공을 즈음하여 즉 공정 90%이상 진척시 평가실시를 원칙(단, 발주청 필요 인정시 90% 공정 미만시 평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40%범위내 반영 가능)
- (3) 시공평가표(건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에 의거 책임감리원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후 평가
- (4) 평가분야 및 배점
  - 품질관리(45~50), 공정관리(10~15), 하도급관리(9~10), 기술개발(9~10), 안전 및 환경관리(5), 현장관리(7~10), 발주기관필요 인정사항(5~10)
  - 상기 7개분야 합계 100점만점으로 산정
- (5) 산정방법
  - 평가세부내용의 배점은 성질·규모·성격 등에 따라 공사발주관서의 장이 평가항목의 배점범위에서 적정 배점 가능

- 세부평가기준 및 등급은 성질·규모 및 재료공학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배점범위가 주어진 경우에는 배점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괄호안에 적당 배점을 기입
- 공사의 특성상 평가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가능한 항목의 배점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항목별 배점을 배분
- 공사의 성질·규모·성격 등에 따라 항목을 10점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
- 건설폐자재 재활용기준 20%이상 초과시 2.0점 가산

나. 시공능력평가

- (1) 시공평가결과를 평균한 점수에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 위반여부, 등에 따라 0.5점씩 감점
- (2) 건설기술개발투자비를 영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금액이상을 당해연도(당해연도의 투자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를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에 0.5점 가산
- (3) 발주청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감산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3점이상 5점미만	0.5
5점이상 10점미만	1
10점이상 20점미만	1.5
20점이상	2

- (4) 품질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시 가산

누계부실벌점	감산점수
KSA9001 또는 9002	1
KSA9003	0.5
KSA14001	1.0



(5) 시공실적 가산(단, 시공실적 가산점은 1점이내)

- 당해연도 당해 발주청에서 준공한 시공평가대상 건설공사 1건초과시 1건당 0.2점
- 준공시 계약금액 200억원이상공사 건수당 0.2점씩

(6) 발주청은 기타 평가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2점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음

## 6. 우수건설업자 지정요건(전국)

-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 상기 참고자료는 대한건설협회 정보처리과에 문의바람

## 7. 우수건설업자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

- 1년간으로 함

## 8. 우수건설업자 지정기준(발주청)

가. 시공능력평가 평점의 평균이 90점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대상 건설업자 10%이상 이내 범위에 들것(단, 당해 발주청의 시공능력평가 대상 건설업자수가 5개이상 10개 미만인 경우 1개업체를 선정)

나. 또한 상당기간 해당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일정수준이상 수행한 업체일 것

- (1) 최근 3년간 시공평가결과 90%이상 80점 이상
- (2) 최근 5년간 당해공사 면허 계속 보유

(3) 당해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상기 면허관련 참고자료는 대한건설협회 정보처리과에 문의바람

## 9. 우수건설업자에 대한 혜택

-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가산점 5점 부여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시 가산(도금액 산정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및 공사대금 선급금 지불에 우대 가능
- 당해 반기 최종집계된 부실별점에서 5점 경감